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다크패턴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규정 신설 등〉

■ 이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02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다크패턴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규정 신설	3
2. 정기적인 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공	9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준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3. 17.
- (3) 회 부 일 : 2025. 3.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크패턴이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 설계·운영 시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예로는 상품 판매화면에서 총 가격의 일부만 먼저 고지하고 소비자가 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추가 비용을 부가 고지하는 유형(순차 공개 가격 책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서의 다크패턴에 대한 문제 제기나 개선 요구 등이 꾸준히 제기된 결과 2025년 2월 개정안 시행으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의 금지 행위가 명시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크패턴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크패턴 등 이 법에서 규제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주기적으

로 실태점검을 하고, 위법행위 신고에 대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다크패턴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및 제26조).

Ⅲ. 검토의견

1. 다크패턴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규정 신설

□ 개정안은 매출액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다크패턴 관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21조의3(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①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제21조의2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해당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u>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생략)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의4(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현행 제21조의3과 같음)

□ ‘다크패턴’¹⁾이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할 때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²⁾를 말하는데, 이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자동 갱신·결제되는 등 소비자의 피해·불만이 누적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온라인 다크패턴을 편취형·오도형·방해형·압박형의 4가지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이 가운데 13개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³⁾⁴⁾

1) 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설계)은 영국의 해리 브링널(Harry Brignull)이 2010년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해리 브링널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다크패턴이라고 정의함.

2) 공정거래위원회의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 p.1

3)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2023. 4. 21.)의 [참고 3] 다크패턴 유형별 규율 검토

○ 그 중 기존 법률⁵⁾의 적용이 어려웠던 숨은 갱신 등 6개 유형⁶⁾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2024년 1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 제13조제6항 및 제21조의2제1항은 앞서 언급한 6개 유형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⁷⁾

-
- 편취형(3):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몰래 장바구니 추가
 - 오도형(7): 거짓 할인, 거짓 추천, 유인 판매, 위장 광고, 속임수 질문,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 방해형(4): 취소탈퇴 방해, 숨겨진 정보, 가격비교 방해, 클릭 피로감 유발
 - 압박형(5): 반복간섭, 감정적 언어사용, 시간제한 알림, 재고없음 높은 수요 알림,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 4)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세부유형 별 정의와 함께 사업자의 관리사항, 소비자의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2023년 7월 발표하였음.
- 5)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6)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 7)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
 2.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34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다크패턴 관련 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작위 의무	① (숨은갱신)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	법 제13조 제6항
부작위 의무	② (순차공개 가격책정)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등의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	법 제21조의2 제1항
	③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질문하면서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	
	④ (잘못된 계층구조)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 유인 금지	
	⑤ (취소·탈퇴 등의 방해) 소비자의 취소·탈퇴 방해 행위 금지	
	⑥ (반복간섭)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 금지	

□ 개정안은 이 중 부작위 의무인 5개 유형(현행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부여하면서 손해배상에 관한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환하여 사업자에게 이를 증명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보증보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⁸⁾에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임.

○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이 시행된 이후에도 일부 사이트에서는 기존의 다크패턴 행위들이 개선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점⁹⁾¹⁰⁾을 감안하면, 개정안에 따른 경우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의2.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책임이 강화되어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다크패턴에 한해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의 전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 대한 가입 의무화를 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현행법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법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조¹¹⁾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 개정안은 다크패턴 위반행위에 한정하여 「민법」 상 일반원칙과 달리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으로,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 타 위반행위¹²⁾와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달리 규율할 필요성에

9) 다크패턴 규제 시행에도 어도비·유튜브 ‘요지부동’... ‘무료체험 후 자동 결제’ 여전(조선비즈, 2025. 2. 21.)

10) 서울시가 OTT·쇼핑멤버십·배달·승차·음악 스트리밍, 5개 분야 13개 주요 구독 서비스 해지 단계의 다크패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반복 간섭(92.3%) ▲취소·탈퇴 방해(84.6%) ▲잘못된 계층구조(소비자 오인 유도, 69.2%) 등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설계가 해지 과정 전반에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독서비스’ 월평균 4만원 지출, 해지 방해도...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보도자료, 2025. 4. 16.).

11)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2)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다크패턴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보증보험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법¹³⁾은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에게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¹⁴⁾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일반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는 권장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타 위반행위는 제외하고서 다크패턴에 한해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다크패턴 관련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가입 의무화의 경우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 13)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④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재화등을 구입·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제수단의 신뢰도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 14)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재화등의 공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시행령 제28조제1항)

2. 정기적인 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공

- 개정안은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의무화하고, 위반행위 신고의 방법, 절차 등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26조제1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u>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u>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 ----- <u>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이행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 법을</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 ----- ----- ----- ----- ----- ----. <u>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의 편의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u>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신고 등을 통하여 다크패턴 등 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 파악 및 소비자 보호 정책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우선, 현재도 소비자정책과 관련한 실태조사는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실시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¹⁵⁾.

- 「소비자기본법」 제81조의2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2024. 2. 13. 신설, 2024. 8. 14. 시행).

○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려는 경우에는 중복 점검의 가능성,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5)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81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를 근거로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

-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기적 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실태조사가 중복하여 실시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률¹⁶⁾에서는 계획 수립, 자료 제출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유사 입법례>

「소비자기본법」

제81조의2(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소비자단체·사업자·사업자단체와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태조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6)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은 p.15의 [참고자료 1] 실태조사 관련 유사 입법례 참조

- 다음으로, 위반행위의 신고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제26조제4항의 내용은 현행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신고의 방법 등을 고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 제39조제2항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공정거래법은 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⁷⁾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중 관련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사전심사) ①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상담, 공정거래모니터요원·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스템의 제보방을 통한 제보 등은 제외한다),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

17) 관련 규정은 p.17의 [참고자료 2] 신고 방법 관련 규정 참조

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건절차규칙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사건절차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한 신고서 양식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신고나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사전심사) ①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법 제80조, 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방문판매법 제43조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제25조, 약관법 제19조,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 할부거래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 하도급법 제22조,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제1항 및 제2항,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대리점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상담, 공정거래모니터요원·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스템의 제보방을 통한 제보 등은 제외한다),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5조의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법 제8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
2. 공정거래법 제76조제1항, 제8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2항 및 제71조에 의한 신고 혹은 분쟁조정신청 : 별지 제5호 서식
3. 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6호 서식
4. 방문판매법 제43조제7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7호 서식
5. 약관법 제19조에 의한 심사청구 : 별지 제8호 서식
6.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4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9호 서식
7. 할부거래법 제35조제4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0호 서식
8. 하도급법 제22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1호 서식
9.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2호 서식
10.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3호 서식
11. 대리점법 제27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4호 서식
12.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신고 : 별지 제15호 서식

③ 심사관은 제2항에 의한 신고서 양식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신고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실태조사의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낮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모든 법령의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 방법·절차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4

【참고자료 1】 실태조사 관련 유사 입법례

「소비자기본법」

제81조의2(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소비자단체·사업자·사업자단체와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태조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하도급거래 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실태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수판매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2】 신고 방법 관련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②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제122조에 따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⑨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조사목적·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사건처리절차 등) 이 법에 위반하는 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9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

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47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8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8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7조, 기타 위원회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과 사건의 조사·심사, 심의·결정·의결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